

의안번호	제2024 - 04호	의 결 사 항
상 년 정 월 일	2024. 12. 11.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24. 12. 11.

||| 목 차 |||

I . 추진배경	1
II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방향	3
III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	4
1. 실험적통계 제도 개선	4
2. 통계품질관리 실효성 강화	6
3. 비조사통계 관리체계 합리화	9
IV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0
[붙임1] 실험적통계 관련 해외 유사 제도	11
[붙임2] 실험적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안)	13
[붙임3] 실험적통계 현황(‘24.11.기준)	15
[붙임4] 통계활용성 진단 문항(안)	17
[붙임5] 정기통계품질진단 핵심진단 개요	18
[붙임6]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9

I. 추진배경

현행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성과

- 현재 국가통계는 통계작성 이전에 승인제도^{사전승인}를 통해 신뢰성이 낮은 통계를 작성·공표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
- 또한, 통계작성 이후의 품질관리^{사후품질관리}제도를 통해 국가통계 품질 저해 요인을 발굴, 개선 과제 도출 등으로 국가통계의 품질을 제고

국가통계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기대

- (시의성) 데이터기반 행정이 정착됨에 따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시의성 있는 정보* 요구

* (예시) 배달문화 확산, 배달비 증가 → 배달비 물가 정보 필요 등

- 또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기술을 공공부문에서도 활용 기대

- (고품질) 한편, 정책 수립·평가의 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품질에 대해서는 지속 강조

- 통계의 품질 우려를 관련 정책과 연결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도 강조

* (예시) "건설사 신고에 기댄 미분양 통계 ... 부정확한 통계로 정책 펴나"(한겨레, '24.5.2.)

- (효율화) 행정자료 공유·연계 등 환경 개선에 따라 조사통계 외 비조사통계(가공·보고통계) 생산도 증가 추세

- 이러한 통계작성 환경, 방법 변화에 부응하여 조사통계 중심으로 설계된 관리체계를 합리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현행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사항

◇ 현행 관리체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는 한편,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운영적 개선 필요

①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통계 확대 필요

- 승인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활용성이 높은 통계정보가 시의성 있게 제공될 수 있는 창구 마련
- 다만, 기존 국가승인통계와 구분되는 통계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 낮은 통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 병행

② 통계품질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통계작성절차 중심의 품질진단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내실화 필요

* 품질진단 내실화 필요('20 국감)

- 또한, 품질이 낮은 통계, 품질개선을 위한 개선과제 이행 관리 등 진단결과의 환류* 강화 필요

* 개선과제 이행률 제고 필요('23 국감), 컨설팅 확대 필요('22 결산) 등

③ 차등적 통계관리 등 관리체계 합리화 필요

- '75년 도입된 통계승인제도는 심사항목과 절차가 조사통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조사통계(보고/가공통계)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승인통계 증가*로 업무 부담도 가중

* 승인통계종수. ('00) 414→('10) 836→('23) 1,330 / 변경승인간수. ('00) 60→('10) 231→('23) 634

Ⅱ. 관리체계 개편 방향

개 편 방 향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통계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

실험적통계
제도 개선

- ① 실험적통계 대상 확대
- ② 실험적통계 관리방안 마련

2

통계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 ① 작성절차 중심의 품질진단체계 보완
- ② 품질진단 결과의 환류 강화
- ③ 국가통계위원회 통계품질분과위 신설

3

비조사통계
관리체계 합리화

- ① 승인항목 효율화
- ② 승인시기 합리화
- ③ 보고통계 변경 승인 간소화

Ⅲ. 관리체계 개편(안)

1 실험적통계 제도 개선

①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 확대

- (실험적통계 대상 확대) 활용 가치가 높은 수량적 정보가 시의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험적통계 대상 확대 추진
 - 현재 실험적통계*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통계”로 정의
 - * 국가통계위원회 의결(21.6.18., 관리체계 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실험적통계 제도 운영
 - ** 반정형데이터(JSON, 로그파일 등), 비정형데이터(영상, 음성, 그림.지도 등) 등
 - *** 딥러닝, 머신러닝, 크롤링기법, 인공지능망 모델 등
 - 신뢰도를 점점 중이지만, 활용성이 높은 통계도 정책 결정자 등 이용자에게 시의성 있게 제공될 필요
- ⇒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의성이 있고 활용 가치가 높은 수량적 정보” 도 실험적통계에 포함하여 대외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실험적통계 대상 확대 예시

- ① **외식배달지수(통계청):** 코로나19이후 음식배달 문화 확산 등 달라진 소비패턴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작성 필요. 다만, 작성방법 등 신뢰성 문제 보완 필요
- ② **가계분배계정(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에 부합하는 방식(거시적)으로 가계의 소득, 소비, 저축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다만, 아직 OECD 등 국제기준 확립 전

실험적통계 대상 확대

현행	개선안
▶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통계	▶ 현행 + 시의성이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수량적 정보 추가

2 실험적통계 관리방안 마련

- (가이드라인 마련) 승인통계와 구별되는 실험적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 실험적통계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 체계 구축, 핵심사항^{유용성, 공공성, 시의성}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 도입 등 체계적 관리 방안 제공
 - 또한, 승인통계와 구별되는 실험적통계를 확인 또는 재확인 하기 위한 핵심요건과 절차 명확화
- (피드백 체계 구축) 보완이 필요한 실험적통계에 대하여 이용자 및 전문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평가 실시
 - ※ Eurostat은 각 실험통계 웹페이지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도 '개발 중인 공식통계'에 대하여 통계 사용자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작성방법을 투명하게 게시하고 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통해 실험적통계의 작성목적 달성
- (실험적통계 재확인 기준 마련) '21년 도입 후 재확인 시점이 도래하는 실험적통계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
 - 승인통계 요건 충족 여부, 작성 지속 필요성 등 재확인 기준을 마련하여 통계승인/작성중지/실험적통계로 재확인 등 결정

실험적통계 관리방안

	현행	개선안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 '통계조정업무 매뉴얼'에 간략한 설명 포함	▶ 실험적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 지침 마련 및 제공
피드백 체계 구축	▶ 이용자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부재	▶ 실험적통계의 유용성 등을 평가하는 피드백 체계 마련
재확인 기준 마련	▶ 실험적통계 최초 확인과 동일 기준 적용	▶ 실험적통계 확인 후 재확인 기간이 도래한 통계에 대하여 재확인 기준 마련

① 통계작성절차 중심의 품질진단 체계 보완

- (통계활용성 진단 강화) 통계작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통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활용성 진단 강화
 - 정기품질진단 시 통계 활용 내역(정책·학술·언론)을 작성토록 지표를 개선하고, 진단팀이 통계 활용양상을 품질진단 결과서에 기술
 - 자체품질진단 시 정책·연구·국제기구 제공 등 통계활용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통계청에서 확인
 - ※ (기존) 정확성·신뢰성 위주의 진단 → (개선) 현행+ 활용성 항목 추가
- (핵심진단 신설) 절차 완결성 중심의 진단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정확성·신뢰성 저해요인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핵심진단 신설
 - 통계전문가(통계, 표본, MD 등)가 정기품질진단 결과를 핵심진단지표를 중심으로 연계·종합 분석하여 통계품질차원의 보완사항을 제시
- (기관별 품질관리현황 진단) 공표일정 공개, 통계설명자료 제공 등 기관 단위 품질관리현황을 진단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추진·관리하도록 기관 차원의 통합 개선과제를 도출

통계작성절차 중심의 품질진단 체계 보완

	현행	개선안
통계활용성 진단 강화	▶ (정기진단) 통계이용자 파악 여부만 진단 ▶ (자체진단) 분야별 통계활용 내역에 대한 증빙 불요(체크 시 점수부여) ※ 정확성, 신뢰성 중심	▶ (정기진단) 통계활용 내역(정책·학술·언론)을 작성하고, 연구진이 통계활용 양상을 진단 ▶ (자체진단) 분야별 활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시 점수 부여 ※ 정확성, 신뢰성 + 활용성 강화
핵심진단 신설	▶ 통계작성절차의 완결성 중심 진단	▶ (정기진단) 정기진단결과와 핵심진단을 통해 잠재된 신뢰성·정확성 저해요인을 파악
기관별 품질관리 현황 진단	▶ 작성통계별 자체품질진단 실시	▶ 작성기관 단위 품질관리현황 진단

② 품질진단 결과의 환류 강화

- (저품질통계* 관리 강화)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장기간 개선되지 않는 통계에 대한 수시진단, 컨설팅 강화

* 정기·자체품질진단 결과 미흡, 언론 등 외부 지적통계, 미공표통계 등

- 수시진단으로 발견된 심각한 품질 개선사항을 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수시진단 결과의 활용성 제고
- 통계전문성이 요구되어 품질 개선과제 이행이 어려운 경우 품질 개선 지원 강화를 위해 컨설팅 단계적 확대*

* 수시진단 및 컨설팅 단계적 확대 추진: (‘24) 연간 5종 → (‘29) 10종

- (개선과제 이행 관리 강화) 장기미이행^(이행시기 5년초과) 과제 원인 분석 및 이행 유도 방안 마련 등 품질진단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관리 강화

* 이행기 도래 후 최대 이행 연기 횟수를 제한, 장기미이행 과제 대상 사무개선 요구 강화 등

개선과제 미이행 유형별 관리방안

	과제성격 또는 지연기간	관리방안
이행기 도래 이전	단순과제	사전 지도(이행점검 전 방문·유선으로 이행방법 안내)
	통계적 전문성 필요	품질개선 컨설팅 우선 지원 검토
이행기 도래 이후	5년 이내	최대 이행 연기 횟수 제한
	5년 초과(장기미이행 과제)	사무개선 요구(작성중지·변경 등), 컨설팅 검토

- (통계품질-통계예산 연계) 통계품질진단결과^(품질, 활용)를 통계예산 사전검토 시 근거자료로 활용

*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고, 활용성이 있는 통계에 대하여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

품질진단 결과의 환류 강화

	현행	개선안
저품질 관리 강화	▶ 저품질통계 대상 수시진단, 컨설팅 지원 연간 약 5종	▶ 저품질통계 대상 수시진단, 컨설팅 지원 연간 확대: '29년까지 연간 10종
개선과제 이행관리	▶ 이행 연기 횟수 제한 없음 ▶ 장기미이행 과제 원인 분석 등 미비	▶ 이행 연기 횟수 제한 ▶ 장기미이행 과제 원인분석 등
품질-예산 연계	▶ 통계예산사전검토 시 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과제 이행에 따른 예산 고려	▶ 통계예산사전검토 시 품질진단 활용도 점검 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

3 국가통계위원회 통계품질분과위 신설

- (추진배경) 국가통계의 품질의 중요성 지속 강조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에 개별통계의 품질 관련 이슈 중점 심의 기능 필요

<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 개편 경과 >

- (09~11년) 정책/경제/사회/품질/지역 5개 분과위 운영
- (12~17년) 품질·지역분과를 정책분과로 통합, 경제/사회분과를 각각 경제1·경제2/사회1·사회2 분과로 분리, 정보분과 신설
- (18~현재) 정책분과에서 지역분과를 분리, 경제1·경제2/사회1·사회2를 각각 경제/사회분과로 통합, 정보분과를 데이터분과로 확대

- (구성안) 기존 5개 분과위 위원 중 통계품질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

* 현재 각 분과위 민간위원 수(9~11명)를 고려해 10명 내외로 구성

- (운영방향)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이슈가 있는 주요 통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의

* (예시) 부동산통계 개선방안 : 경제통계분과위와 연석회의 개최 등

- (운영세칙 개정) 통계품질분과위 신설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국가통계위원회 의결 사항) 개정^(붙임6)

통계품질분과위 신설(분리) 전후 기능

분과명	기능		분과명	기능
통계정책 분과위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	통계정책 분과위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 조정, 통계분류 제·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계품질 분과위	통계품질관리 기본계획, 품질진단체계 개선, 개별통계 품질개선방안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승인 항목 효율화

- 조사통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판단 등 실효성이 없는 승인 항목 생략*

* 비조사통계(보고·가공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통계로,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적용에 제한적

- ▶ (보고통계)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 (가공통계)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② 승인시기 합리화

- 既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비조사통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승인신청시점 합리화
- 신규/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자료수집' 30일/20일 전에서 '공표' 30일/20일 전으로 변경

③ 변경 승인 간소화

- 보고통계 변경 방법을 기존 공문에서 통계정책관리시스템으로도 신청·처리하는 형태로 확대
- 통계모니터링, 자체품질진단, 수시품질진단 등을 통한 사후적 관리, 무단 변경 공표 등 통계법 위반 시 법령에 따른 조치 등으로 관리 보완

비조사통계 관리체계 합리화

	현 행	개 선 안
승인항목 효율화	▶(모든통계)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적용	▶(보고·가공통계)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관련 승인항목 효율화
승인시기 합리화	▶자료수집 30일 / 20일 전	▶공표 30일 / 20일 전
보고통계 변경승인 간소화	▶공문	▶공문 또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

I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① 기대효과

- (시의성 제고) 실험적통계 대상 확대 등으로 시의성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
- (신뢰성 향상) 품질진단체계 보완, 분과위 신설 등으로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국가통계 품질의 상향 평준화 기대
- (행정 효율화) 작성방법에 따른 차등적 통계관리로 행정 비효율성을 낮추고, 관리 역량을 주요통계에 집중, 작성기관 부담 경감

② 향후계획

- 개선 과제추진 · 점검을 위한 TF팀 운영 : '25. 2.~11.
- 개선 과제 관련 통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25. 상반기
- 실험적통계 가이드라인 등 관리 방안 마련 : '25. 하반기
- 통계품질진단 체계 개선 추진 : '25. 1.~
- 국가통계위원회 통계품질분과위 운영 : '25. 3.~
- 비조사통계 관리체계 개선 : '25. 하반기

1. 영국 「개발 중인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in development)」

□ 실험통계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 (기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를 실험통계(Experimental Statistics)로 분류·관리, 공식통계 범주에 포함
- (변경) 현재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공식통계를 의미하는 ‘개발 중인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in development)’로 명칭 변경(‘23.9.)
 - 아직 공식통계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방법론이나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실험하는 통계, 기존통계를 고도화한 통계를 포괄

□ 참고사항

- (목적) 해당통계가 일정기간 후에 통계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 (작성기준) 공식통계의 혁신과 개선을 강조
 - 새로운 소스와 방법의 활용, 사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에 부응, 기존 통계와의 중복성 회피 ⇒ 새로운 통계 또는 기존통계의 고도화
- (평가) 통계 생산자, 통계전문가와 해당전문분야 지식을 갖춘 전문가, 잠재적 사용자들이 해당 통계가 충분한 품질과 가치를 가지는지 평가
- (공표 시 준수사항) 유용한 점에 대한 기술, 이용자 수렴의 구체적 방법, 공식통계로 전환될 시점 제공

2. EUROSTAT 「실험통계(EXPERIMENTAL-STATISTIC)」

- (대상) 사용자의 요구에 적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 방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통계
- (공표 시 준수사항) 실험적인 것으로 표시, 자세한 방법론적 설명 함께 제공, 각 실험통계의 웹페이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정보 제공
- (작성 국가)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16개국

3. 미국 「실험적 데이터 제품(Experimental Data Products)」

□ 실험적 데이터 개념 및 목적 운영체제

- (개념) 다른 관련 제품이 없는 경우 데이터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혁신적인 통계제품
- (목적) 특정 문제를 참조하기 위해 대체 소스나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 운영체제 및 특징

- 2019년 6월 실험적 데이터 제품의 범주 제정
- 실험적 데이터 제품 도입 시 방법론 및 표준위원회(Methodology and Standards Council)를 통해 논의 진행 및 의견 청취
- 범위가 제한적이며 민간부문 빅데이터 등 새로운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들을 주로 포함
- 통계 생산자의 책임이 강조
- 미국 인구조사국은 데이터 제품에 대한 개념 및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제공

□ 실험적 데이터 제품 유형('23년 기준 20개)

-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공식통계보다 작은 지역의 통계 생산 또는 공식 통계에 제공하지 않는 특정 지역의 데이터 산출 유형
-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유형
-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 지표를 생성하는 유형
- 통계 조사를 실시하되, 온라인 조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자주 제공하는 유형
- 행정 데이터를 기본 자료원으로 사용하여 특정 세금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형

□ 공표 시 준수사항

- 중단된 실험적 통계에 대한 정보 지속 제공

◇ 실험적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 제시

- (도입취지)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는 통계, 활용 가치가 높은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제공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함

※ 제도운영 근거; 국가통계위원회 의결사항(21.6.)

- (개념)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또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거나, 시의성 및 활용 가치가 높아 대외 공개 필요성이 있는 통계

■ 참고. 실험적통계 유형

구 분	설명	작성 예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나 방식 활용	▶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정형데이터 - 거래실적, 카드자료, 대용량 DB 등	▶ 사업체 매출 및 영업일수, 가계지출속보성지표, 등 12종
	▶ 비정형데이터 - 모바일통신, 온라인 활동자료 등	▶ 통신모바일인구이동량통계, 뉴스심리지수 등 5종
전통적 방식 활용, 검증이 필요한 통계	행정자료 및 승인통계 등을 연계 활용 - 실험적 단계에서 품질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	▶ 외식배달비지수, 가계분배 계정 등 4종

- 실험적통계 작성 지침

- (신규) 확인 요청 시 **핵심요건*** 위주로 심사
 - 핵심사항을 검토하여 작성기간 3년을 정하여 확인하고 이용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권고

* 기초자료의 포괄범위 적절성 여부, 기초자료 및 추정·가공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여부 등

 **필요시 통계조정소위원회를 거쳐 '확인' 여부 결정**

- (변경) 확인 받은 내용 변경 시 통계청에 알림, 이용자에게 변경사항 제공
- (중지) 작성 목적 미부합, 활용성 저조 등의 사유로 중지 가능

□ 실험적통계의 체계적 관리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보완이 필요한 실험적통계에 대해 정책입안자, 연구자, 일반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유용성 평가 실시
 -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도출
- (재확인 평가) 통계작성기관은 실험적통계의 핵심요건 재검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자체평가) 실험적통계 재확인 요청 시 유용성, 공공성, 시의성 등 자체 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
 - ※ (평가항목 예시) 명확한 작성 목적, 데이터 관리, 작성과정의 투명성, 작성방법론 타당성, 사용자 피드백 실시 여부, 명확한 활용 지침
 - (내외부 전문가 평가) 실험적통계 유용성 등 검증을 위해 재확인 심사 시 사안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 실험적통계 재확인 기준

- (대상) 최초 확인 후 재확인 시점 3년이 도래하는 실험적통계
- (요청) 공문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요청
- (심사) 최초 확인된 실험적통계 작성 방법 변경 여부 및 개선 사항, 작성 지속 필요성, 승인통계로 전환 계획 이행 여부 등 위주로 검토
 - ※ (심사항목 예시) 유사중복여부, 공개여부, 통계작성 대상, 작성방법 작성의 유용성 승인요건 충족 여부
- 재확인 판단
 - (계속 작성) 실험적통계 핵심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 작성기간 연장
 - (확인 취소) 3년 경과 후 재확인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재확인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승인통계로 전환) 신뢰성, 공공성 등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 신청

☞ 필요시 통계조정소위원회를 통해 결정, 주요 사안인 경우 통계조정위원회 실시

붙임3

실험적통계 현황(24.11월 기준 21종)

연번	통계명	주요내용	
1 2021-001호	속보성 인구이동통계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 작성목적	통신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인구 이동 패턴의 변화 등을 조기에 파악, 경제·사회 다양한 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자료원	SK텔레콤
2 2021-002호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한 소득통계 보조지표) <통계청 복지통계과>	■ 작성목적	정부의 현물복지정책이 가구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활용
		■ 자료원	건강보험 통계연보, 교육통계 연보 등 연보자료 및 보육료 수급현황 국가장학금 수급현황 등 행정자료 등 10여종
3 2021-003	모바일기반 국립공원 이용량 통계 <국립공원공단>	■ 작성목적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립공원 이용량의 변화 및 여가휴양 실태 등을 조기에 파악, 국립공원의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 자료원	SK텔레콤
4 2021-004호	서울생활인구 <서울특별시>	■ 작성목적	측정시점 현재 서울에 존재하는 '현주 인구'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외국인) 파악
		■ 자료원	KT통신데이터, 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 포함)
5 2022-001호	뉴스심리지수 <한국은행>	■ 작성목적	경제심리 변화를 공식 경제심리지표(BSI, CCSI) 공표 이전 신속히 파악, 경제동향 모니터링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자료원	한국지식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공받은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 경제분야 뉴스기사 (약14백만건 내 문장 약 1억 5천만 개)로부터 표본문장을 추출
6 2022-002호	사업체매출 및 영업일수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 작성목적	경제위기,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
		■ 자료원	신한카드의 가맹점 약 192만개 사업체, 한국정보통신(KICC)의 가맹점 약 50만개 사업체
		■ 작성방법	가맹점 카드 매출액, 가맹점 현금 매출액, 평균 영업일수를 전국, 시도(17), 시군구(78), 업종분류(7)하여 작성
		■ 공표주기	매주/매월
		■ 공표범위	▶지역 : 전국, 시도, 시군구 ▶내용 : 업종분류별(7개)
7 2022-003호	노란우산공제(폐업)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 작성목적	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노란우산공제(폐업) 속보성 지표』 구현으로 경제위기,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
		■ 자료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 데이터
8 2022-004호	구인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 작성목적	구인현황과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자료제공
		■ 자료원	잡코리아에 등록된 사업체의 채용 모집공고 인원수
9 2022-005호	가계지출 속보성지표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 작성목적	가계지출의 변화 측정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자료원	신한카드 가입자 신용카드 집계데이터, 신한은행 가입자 전자지급서비스 충전액 집계데이터

연번	통계명	주요내용	
10 2022-006호	서울생활 이동데이터 <서울특별시>	■ 작성목적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도시 목표에 부합하는 통근/통학인구, 시민행동 데이터를 융합제작, 주택/교통정책 등에 활용하고 시민공개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자료원	KT
11 2023-001호	서울생활물류* <서울특별시>	■ 작성목적	서울시 택배물류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여 도시계획을 비롯한 소지역별 물류 수요 예측 및 도심물류 서비스의 최적 배분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기초자료 활용
		■ 자료원	CJ대한통운
12 2023-002호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 작성목적	가구구성, 연령대, 소득/소비지출 등 차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가구특성을 반영한 물가지수 작성
		■ 자료원	가계동향 및 소비자물가조사
13 2023-003호	배달외식 매출 속보성지표 <통계청>	■ 작성목적	민간빅데이터를 이용한 배달외식 매출 속보성지표 구현으로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
		■ 자료원	한국신용데이터 가입자
14 2023-004호	차량 GPS기반 도로유형별 주행거리 <한국교통연구원>	■ 작성목적	도로이동 오염원 배출량 산정,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자료원	차량GPS데이터
15 2023-005호	온라인 구독서비스 지출 <통계청>	■ 작성목적	민간데이터를 이용한 온라인 구독서비스 지출 구현으로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이 발생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
		■ 자료원	신한카드
16 2023-006호	배달외식 지출 속보성 지표 <통계청>	■ 작성목적	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배달외식 지출 속보성지표 구현으로 경제위기,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
		■ 자료원	신한카드
17 2023-007호	온라인 소비지출 속보성지표 <통계청>	■ 작성목적	민간빅데이터를 이용한 온라인 소비지출 속보성 지표 구현으로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
		■ 자료원	신한카드
18 2023-008호	외식배달지수 <통계청>	■ 작성목적	코로나19이후 달라진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외식배달지수 작성/제정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활용성 및 체감도 제고
		■ 자료원	소비자물가동향조사
19 2023-009호	통신 모바일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청>	■ 작성목적	통신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이동지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삶의 질과 밀접한 증거기반 교통/근로 정책의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자료원	SKT
20 2024-001호	가계분배계정 <한국은행>	■ 작성목적	국민계정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소득, 소비, 저축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자료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계정
21 2024-002호	생활인구 <통계청>	■ 작성목적	통신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정책지원의 기초자료 제공
		■ 자료원	행안부, 법무부 공공데이터, 통신사

* (서울생활물류) '24.7. 작성 중단된 실험적통계, KOSIS에는 기존 자료 제공 중

□ 추진배경

- 심층·전문진단에서 통계의 구체적 활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진단 결과에 이용자 관점 반영도 제고

□ 진단 문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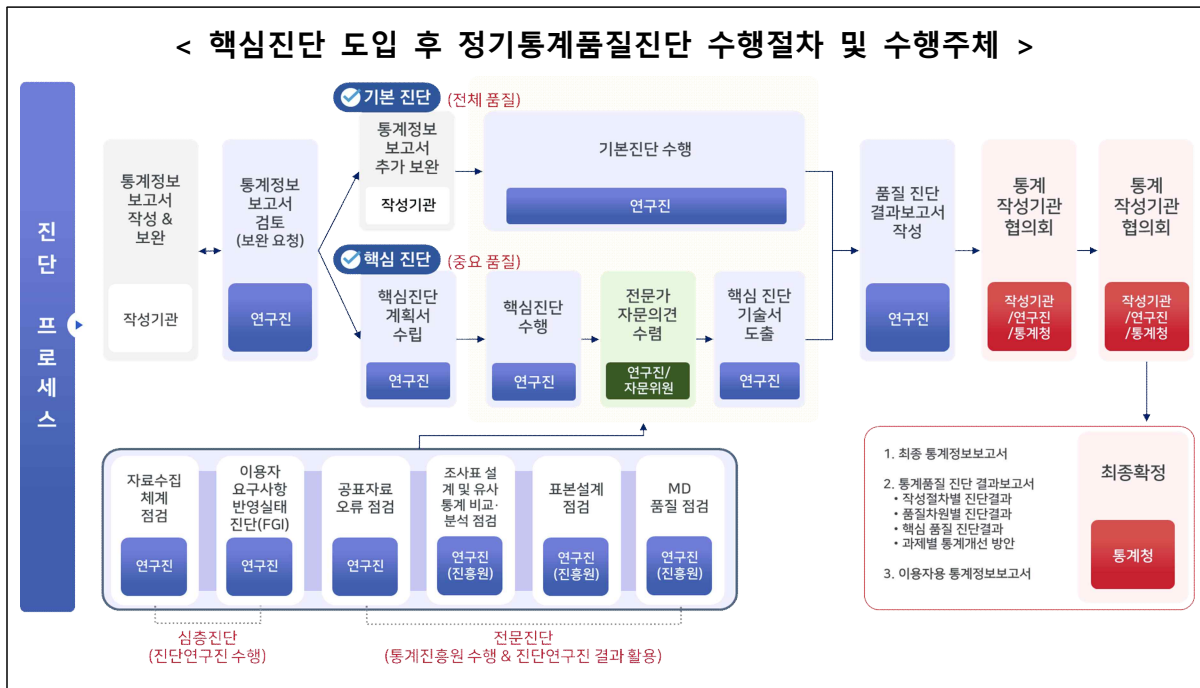
- 통계별 활용 내역을 통계정보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 연구진이 통계의 구체적 활용 양상을 진단

작성 절차	지표	진단문항(안)	비고
작성 기획	통계작성 목적 (관련성)	6-2. 기획 시 주된 활용 분야에 대한 명시 * 구체적으로 명시 / 간단하게 명시 / 없음	
	유형별 주요 이용자 관리 (관련성)	7-1. 기획 시 유형별 주요 이용자 관리 * 관리함 / 관리하지 않음	
통계 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통계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10-1. 통계공표 방법 다양화(브리핑, 보도자료, 보고서 간행물, 홈페이지) * 3개 이상 / 2개 / 1개 / 없음	
		10-2.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제공 여부 * DB형식으로 제공 / 문서파일로 제공 / 제공하지 않음	
	통계의 이용자 활용* (접근성)	11-1. 공표 후 통계활용 경로(KOSIS, MDIS, 자체 홈페이지 등) 및 분야별(정책, 학술, 언론) 이용자 현황 파악 여부 * 있음 / 없음	신규
		11-2. 공표 후 통계 활용 분야(정책, 학술, 언론)별 이용자 활용 사례 파악 여부 * 구체적으로 파악 / 간단하게 파악 / 파악하지 않음	신규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용도 파악 유인을 위한 진단문항 추가(추후 근거자료 요구 예정)

□ 개요

- (목적) 절차 완결성 중심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잠재된 통계 품질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정확성·신뢰성 진단의 이용자 체감 강화
- (내용) 통계전문가(통계, 표본, MD 등)가 기본·심층·전문진단결과를 연계·종합하여 주요 통계품질을 점검하고 기술서 도출



- (지표) 국내·외 사례의 정확성 관련 진단지표 현황을 참고하여 핵심 진단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지표(안) 도출

< 핵심진단 지표(안) >

핵심진단지표	참고 사례			
	국내 정품	스웨덴	국외 Eurostat	UN
조사모집단 또는 표본추출틀	조사모집단(전수조사) 또는 표본추출틀(표본조사)	frame coverage	over coverage	coverage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sampling	sampling	sampling
무응답 대처	무응답 대처	non response	unit, item non response	non response
항목무응답 실태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non response	item non response	non response
항목무응답 대체	항목무응답 대체	non response	item non response, imputation	non response
단위무응답 실태	단위무응답 실태	non response	unit non response	non response
통계추정 산출식 및 내용	통계추정 산출식 및 내용	model assumption	model assumption	model assumption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인관성)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Revision error	data revision	-
측정	-	measurement	measurement	measurement
자료 처리	-	data processing	processing	processing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24년 12월 11일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부문별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2. 통계품질 분과위원회(신설)
3.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4.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5.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6.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② 위원장이 특정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계분류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 통계품질 분과위원회 : 통계품질관리 기본계획, 품질진단체계 개선, 개별통계 품질개선방안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3.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 국민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농림·수산, 물가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 고용·임금, 인구, 환경, 교육·문화·과학, 보건·복지·사회, 가계소비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5.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 행정자료 활용전략, 데이터허브 구축·활용, 자료의 표준화·연계 방안, 통계관련 시스템 구축, 자료제공,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 지역통계 발전계획, 지역통계 개발·개선, 지역통계 표준화·총괄조정,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7. 특별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해당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 고위공무원단 내지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통계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 소관 분야 부처의 통계발전을 위하여 통계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조 (안건의 제안)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는 안건을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는 통계청장 또는 분과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통계청장이 소집한다.

제8조 (연석회의의 운영) ① 통계청장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분과위원회 중 복수의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석회의의 위원장은 참여 분과위원장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